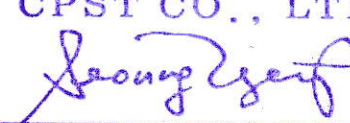

문서번호 : 제 23-80-07 호 2023. 08. 29
수신 : 전 직원
발신 : (주)시피에스티 김보라 차장
제목 : (주)시피에스티 공정거래 관련 내부규정

내 용

(주)시피에스티는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경쟁사와 공정 경쟁하고 협력사와 상생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 규정을 만들어 준수하고자 한다.

1. 계약해지·단가변경·물량변경·납품기일 변경 등 세부적인 거래 조건을 설정할 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합리적 거래 기준이 아니라, 비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 별로 차별적인 거래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3. 상품(용역) 등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거래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 없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지 않는다.
4. 당사의 상품(용역)을 납품 받는 거래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당사 상품 등의 거래 실적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5. 거래 양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하기로 정해진 상품(용역)만 납품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거래하기 꺼리는 특성 상품 등을 일방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6.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사에게 해당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향응·상품권 등 경제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7.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해지 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거래 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않는다.
8. 가격, 생산량 등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하거나 제공 또는 교환하지 않는다.
9. 경쟁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쟁사의 전·현직원에게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10. 거래 상대방에게 계약 성사 조건으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경쟁사의 고객에게 당사와 거래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주)시피에스티 대표이사 이 승 업

CPST CO., LTD

Jeong Yeup Lee / President 